

2025년 축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축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환경보전을 위한 탄소 중립형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요구, 축산업 규제 강화 등 축산분야를 둘러싼 급변하는 대내외 흐름에 적극 대처하여 제주의 가치를 담은 글로벌 축산도약을 위한 『2025 축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법인, 단체 등에서는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2024. 12.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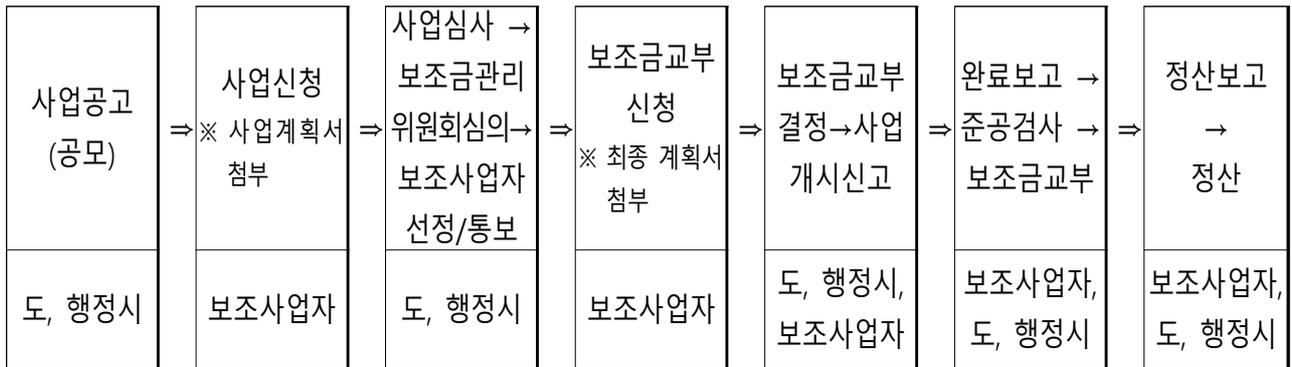
1. 사업개요

- 사업명 : 붙임 계획의 축종별, 분야별 사업계획 참조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농축협,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법인 등
-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규모, 내용, 지원비율 등은 첨부된 계획을 참조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12. 24. ~ 2024. 1. 15.
- 접수방법 : 세부사업에서 정한 주관기관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 구비서류
 1.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신청서(서식 참조)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참조)
 3. 세부사업 항목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4. 단체소개서(법인, 생산자단체 등 개인이 아닌 경우)
 5. 축산업허가(등록)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체)
 8.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9.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0. 기타 검토 필요한 서류

3. 보조사업 추진절차



- 사업심사는 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평가 순위를 부여
- 자체 심사(평가)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4. 기타 사항

- 보조금 지원자격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일러두기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
- 서류심사, 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신청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는 자체심사 단계에서 검토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 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유 의 사 항 >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710-2121), 제주시 축산과(☎728-3401), 서귀포시 축산과(☎760-2781)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림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림혁신담당관)
 - 신고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림혁신담당관실(☎710-4623)
-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붙임 : 1) 2025년 축산사업 추진계획

2)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서 서식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기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홍보비	500 63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홍보비	500 63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 ③ 금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